

第269回國會
(定期會)

建設交通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9月12日(水)

場 所 建設交通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首都圈整備計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43.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4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의원 대표발의) 조속처리에 관한 청원(계속)
45. 거금도 연도교 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
46.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

審査된案件

45. 거금도 연도교 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 4
46.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 4
 1.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 · 고조홍 · 남경필 · 안택수 · 유정복 · 이규택 · 임태희 · 한선교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13
 2.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3.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김부겸 · 김선미 · 김영선 · 김진표 · 김태년 · 문학진 · 박기춘 · 백원우 · 심재덕 · 안병엽 · 안상수 · 우제창 · 윤호중 · 이원영 · 이종걸 · 장경수 · 정병국 · 정성호 · 조정식 · 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13
 4.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 · 정병국 · 고경화 · 김애실 · 김영숙 · 김우남 · 이경제 · 이계경 · 고조홍 · 전여옥 · 신상진 · 이규택 · 남경필 · 김영선 · 고흥길 · 임태희 · 차명진 의원 발의)(계속) 13
 5.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신학용 · 안상수 · 김동철 · 정성호 · 심재덕 · 장복심 · 박상돈 · 문학진 · 엄호성 · 안병엽 · 신국환 · 이해봉 · 진병현 의원 발의)(계속) 13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안명옥 · 이진구 · 유기준 · 엄호성 · 정문현 · 고경화 · 김형오 · 박승환 · 이경제 · 이해봉 · 남경필 의원 발의) · 14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9.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 · 장복심 · 신학용 · 한광원 · 원혜영 · 김정권 · 김교홍 · 정장선 · 박상돈 · 강길부 · 변재일 · 신국환 · 문석호 · 주승용 · 양형일 의원 발의)(계속) 14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구논희 · 이영호 · 정성호 · 황우여 · 노현송 · 김태년 · 엄호성 · 이계안 · 민병두 · 강혜숙 · 우제창 · 정두언 · 정동채 · 박상돈 · 홍미영 · 윤원호 · 김재홍 · 이광철 · 이경숙 · 박명광 · 우상호 · 김재윤 · 우윤근 · 장향숙 · 문석호 · 김영주 · 양형일 · 신기남 · 최재성 · 안영근 · 유승희 · 오제세 · 김형주 · 강성중 · 이원영 · 심재덕 · 정의용 · 배기선 · 유재건 · 김희선 · 김종률 · 김현미 · 최병국 · 박기춘 · 신학용 · 강기정 · 송영길 · 이근식 · 장경수 · 정장선 · 이강래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4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 · 고조홍 · 김송자 · 김효석 · 박재완 · 서재

- 관·신중식·이상열·이인기·이인영·전병현·정성호·정진석·채일병·최인기 의원 발의)(계속) 14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최인기·엄호성·신상진·최성·이해봉·김태년·노현송·이영호·고조홍·유재건·안상수·심재덕·이석현·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14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길부·우제항·변재일·양승조·신학용·이종걸·최규식·김태년·서재관·장복심·주승용·염동연 의원 발의)(계속) 14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구노회·김동철·김종률·심재덕·양승조·오제세·이시중·이해봉·정문헌·정성호·정장선·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4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박세환·이인기·이성권·김명주·박형준·서상기·김학송·김영선·박재완·김태환·이명규·이계경·김정훈·김양수·심재엽·박승환·안홍준·이해봉 의원 발의)(계속) 14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고조홍·김정권·김재원·김재윤·박상돈·신국환·신상진·안경률·안상수·안택수·이계경·이성권·이인기·정갑윤·정문헌·정성호·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14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정갑윤·이계경·정화원·신상진·최구식·안홍준·유기준·김기현·김명주 의원 발의)(계속) 14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양형일·우제창·변재일·이종걸·이근식·장복심·조일현·박상돈·노현송·이영순·유선호·최규식·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4
2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인기·이해봉·정화원·이강두·신상진·강기갑·김명주·안영근·엄호성·김영덕·정문헌·안병엽·유승민·이방호·김우남·김광원·조일현·김낙성·김태년·신중식·이상배 의원 발의)(계속) 14
2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주승용·노영민·우원식·김낙순·선병렬·우제항·조일현·장향숙·신중식·유선호·한광원·한화갑 의원 발의)(계속) 14
2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강길부·배일도·이인기·김석준·박재완·이한구·김태환·김성조·정갑윤·임태희·유승민·고조홍·김애실 의원 발의)(계속) 15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강기정·윤호중·김선미·송영길·유승희·김태홍·양승조·안명옥·이원영·김영주·신중식·구노회·이광철 의원 발의)(계속) 15
2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권선택·유재건·장복심·장영달·구노회·정성호·서갑원·우제창·우윤근·이영호·양승조·송영길·이은영 의원 발의)(계속) 1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김동철·김재홍·김태년·김형주·노현송·배기선·배일도·백원우·서병수·서재관·유재건·이해봉·장향숙·정성호·정장선 의원 발의)(계속) 15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우원식·노영민·김형주·장향숙·홍미영·박상돈·서갑원·노현송·김태년·정성호·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15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천정배·양승조·김재윤·김교홍·정봉주·강기정·윤호중·이미경·이상경·서혜석 의원 발의)(계속) ……	15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무성·김정권·이성구·엄호성·신상진·박종근·이계경·임해규·박형준 의원 발의)(계속) ……	15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교홍·문학진·박상돈·서재관·유필우·정성호·주승용·한병도·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	15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종률·김무성·이해봉·박상돈·신상진·이인기·황우여·김정훈·이성권·안경률·고조홍·서병수·엄호성·정형근·안상수·김희정·박재완 의원 발의)(계속) ……	15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김정권·문학진·최규성·유승민·최병국·김재윤·채일병·정의화·이낙연·주성영·김종률·김효석·이계경·박상돈·오제세·유선호·고조홍·손봉숙·채수찬·임인배·김형오 의원 발의)(계속) ……	15
37.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38.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이진구·허천·고홍길·김영덕·차명진·조일현·김태환·정희수·진영·고희선·김석준·김재경·유정복·최구식·박승환·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15
39.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40.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주성영·이해봉·엄호성·김태환·곽성문·유승희·이인기·안병엽·김성조·공성진·이계경·김광원·이상배 의원 발의)(계속) ……	15
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고조홍·김광원·김명주·김용갑·김우남·김재경·김충환·신상진·안상수·안영근·엄호성·윤두환·이상배·이인기·이주영·이진구·임인배·정의화·정희수·차명진·황진하·허천·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	15
4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3
43.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3
4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조속 처리에 관한 청원(이주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33

(10시3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45. 거금도 연도교 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

46.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먼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45항 및 46항 이상 2건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상 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윤두환, 이시중 단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거금도 연도교 사고 진상조사단장이신 윤두환 위원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위원 거금도 연도교 사고 진상조사단장 윤두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거금도 연도교 사고 진상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정희수 위원, 김선미 위원,

주승용 위원, 정진석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우리 조사단은 2007년 5월 30일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황해성 기반시설본부장, 강팔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이종수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기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록교 상판 붕괴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설계·시공상의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금도 연도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2368억원을 투입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에서도양읍 소록리 간 총 연장 6.7km의 국도 27호선 신설공사로서, 2002년 12월 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구간 중 교량가설은 거금도와 소록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연도교와 소록도 내 육상교량인 소록교 2곳이며, 이 중 소록교 가설현장에서 2007년 4월 5일 교량 상판의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붕괴사고 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사고조사반이 구성되어 전문분야별 원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의 원인으로 가설지지대인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 및 시공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고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6쪽에서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우리 조사단의 진상조사결과로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에 따라 시스템 동바리의 부실설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설계에 대한 하도급사, 원천시공사, 책임감리원, 발주청까지 단계적인 확인과정이 있었으나 책임성이 담보된 전문적인 확인과정이 없이 형식적인 보고 및 승인이 이루어져 사고발생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첫째 가시설물에 대한 관리 체제 구축, 둘째 현행 책임감리제의 보완, 셋째 시공사의 책임성 강화, 넷째 발주청의 책임성 확보, 다섯째 다단계 하도급 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 등이 필

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2쪽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조사단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등 조사 결과를 예단하여 건교부가 여러 조치를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점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공무원들이 책임감리제라는 미명으로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데 대해 해당 관리청과 건교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그리고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진상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개선방안 그리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금도 연도교 사건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렇게 다녀오셔서 또 이렇게 알찬 이 진상보고서를 읽어 주신 우리 윤두환 간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진상조사단장이신 이시중 위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중 위원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진상조사단장 이시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김석준 위원, 김재경 위원, 한병도 위원, 이영순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우리 조사단은 2007년 6월 4일 미로-삼척 간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이춘희 차관, 권오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고경주 금광기업 대표이사, 이명학 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대금 편취사건 발생경과와 조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편취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편취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로-삼척 간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1794억 원을 투입하여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에서 등봉동까지 총 연장 7.9km의 국도 38호선을 확장 및 포장하는 공사로서 1999년 4월 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로-삼척 간 공사구간에는 5개의 교량 가설을 위하여 가시설물인 가교 설치가 설계상 반영되었으나 동 공사의 하도급사가 설계에 반영된 철재용 가교 중 일부만 시공하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6회에 걸쳐 기성금 50여 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국가청렴위원회의 부조리 신고 내용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시작된 동 사건의 주요 진행경과와 편취내역 및 시공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 5쪽에서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 편취사건에 대한 우리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을 대리하여 공사의 시공과 안전관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원의 부도덕성과 업무 소홀이 동 사건의 원인이 된바 현행 감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발주청의 관리·감독 측면으로 현행 규정상 필수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기성금 지급 시 한 차례의 현장 확인도 없었고, 지원 업무 수행자의 현장조사도 공사 관련 민원처리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가교의 설계 측면으로 불필요한 과다 설계가 시공의 부조리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첫째 책임감리제의 보완을 위하여 현장 감리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제도 도입,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장기 근무 책임감리원의 교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발주처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성 검사 시 공무원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지원 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설계 및 시공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부실·과다 설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과 가시설물 시공방법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부는 우리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공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미로-삼척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이시종 위원님을 비롯한 진상조사단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 김재경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온 미로-삼척 사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6, 7페이지를 보니까 일단 재판이 종결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꽤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일단은 집행유예로 1심에서 다 석방이 됐고, 그렇지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에 있는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동원개발인가요? 동원개발 대표이사는 아마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동원개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진척사항에 대해서 혹시 건교부에서 챙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1심 재판이 9월 6일 났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동원개발의 대표이사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이라서 재판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해외로 갔다고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이 회사가 원주 인근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는 회사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동원개발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처분은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시지요. 24페이지에 보면 영업정지 2개월

이 확정된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저, 원주지방……

○**김재경 위원** 아니, 차관님께서 이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무자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보시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김재경 위원**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건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권자가 원주시장인데요.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처분 요구만 된 상태입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6, 7페이지에 죽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동원개발로 보는 것 아닙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예.

○**김재경 위원** 그런 것이지요? 지금 기소중지되어서 해외에 가 버리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재판받아서 집행유예, 심지어는 기소유예까지 된 사람도 있던데, 나 이것 참 감으로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원개발에 대해서 영업정지 2월이 적절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쪽저쪽 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니까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김재경 위원**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이 최고긴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

○**김재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건의 핵심 회사를 영업정지……

대표이사는 외국 나가 가지고 지금 재판도 못 받는데 영업정지 2개월을 요구했다는 게, 그때 제가 거기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형평성이 맞느냐 이것이지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감리회사가 그 이후에…… 저쪽의 어디더라? 저번에 철도가 막 붕괴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가좌역 붕괴사건……

○**김재경 위원** 가좌역인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가좌역 감리회사도 이 회사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같은 회사입니다. 유신코퍼레이션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서 이 유신코퍼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한 행정처분이 이런저런 게 있긴 합니까 다만 조금 이런 큰…… 이것 외에도 아마 꽤 많은 공공 발주공사 감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파악을 했었어요,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주된 책임 회사인 동원개발 대표이사가 외국에 나가서 기소중지가 되어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지금 다 재판이 끝났는데 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회사 대표이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수사가 되고 재판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동원개발의 행정처분 요구가 적정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신코퍼레이션이 어떤 공공 도급공사를 감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가지고 행정 차원에서 그 감리회사를 다시 한번 감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할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좀 낮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차관 말이에요,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 책임 감리의 무한한 책임, 이 부분이 너무 소홀히 다

루어졌다는 지적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렇습니다.

○**윤두환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두환 위원** 정리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달라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주승용 위원님!

○**주승용 위원** 거금도 연도교 가설 공사인데요. 이게 턴키방식이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해서 입찰하는 방식인데 진상조사 결과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설계 부실, 이게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설계를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주승용 위원** 시공을 하도급을 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턴키식이라는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심의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설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설계가 우수한 업체에 주는 게 턴키방식인데……

○**주승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단계로 해 가지고 동바리의 설계를 부실로 설계한 데가 심의에서 통과됐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 설계 심의를 할 때에는 설계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 시공과 관련된 실시설계에 해당되는 아주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얼마만큼 안전성 있게 잘 됐는가 또 설계에 비해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설계 심의할 때 입찰 시에?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주승용 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부실 설계를…… 그 다리가 그렇게 복잡한 설계에 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산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익산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지고……

나는 이게 지금 턴키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입찰이 됐는데 이 정도의 교량 하나를 설계하는데, 그렇게 나는 어려운 설계가 아니라고 보고, 설계까지도 이렇게 다단계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저기 어디 오피스마구조건축사사무소에 동바리 설계를 의뢰했는데 이 정도도 심의 시에 찾아내지 못하는 심의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위원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설계하기 위한 전체적인 설계는 당연히 턴키를 처음 입찰할 때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이 전체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주승용 위원** 그렇지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여기에서 말하는 지적된 내용은 동바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바리와 같이 공사를 시공해 가는 과정에서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주승용 위원** 동바리 설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첫 번째 처음에 입찰할 때는 그 설계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주승용 위원** 그 전체적인 윤곽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현대건설에서 설계해 온 것만 심의를 하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자세한 동바리 같은 구조설계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아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동바리와 같은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공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된 내용을 심의해 가지고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턴키입찰을 할 때에는 이것은 심사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교량 하나 하는데 그렇게 모양만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만 설계 심의를 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계 부실한 오탁마구조건축사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계라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지금 그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어서 현재 사법기관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큰 아주 복잡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내가 그게 이해가 가는데 교량 하나 하는데 이 정도의 설계까지도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뭔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같이 검토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계마저도 다단계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정말 문제지요, 안전성에. 더군다나 간단한 교량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턴키방식을 채택한 배경은 과거에 공사 부실사고 같은 게 나면 언제든지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시공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턴키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 턴키방식을 채택하려면 엄격하게 심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그냥 턴키방식으로 해 네 책임하에 해라, 이렇게 해 놓고 그 내용에 대한 것, 지금 답변한 식으로 중요한 몇 부분만 하지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턴키방식에 대한 제도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 제도를 계속 지속하는 한 각 단계별 심사 문제를 좀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창 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좀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설계 부실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의 큰 두 가지는 첫째, 우선 발주청에서 설계비를 충분히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초조사를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하지 실지로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데이터를 새로 조사해서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게 하나 지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초조사비를 인정하되 그 기초조사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는 이런 제도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각 단계별 과정이 있잖아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이재창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건너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설계 부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만 지금 턴키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공사의 부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좀 개선하든 이런 현행 문제점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설계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아울러서 흔히 감리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감리도 역시 설계 그런 게 철저히 됐을 때 감리가 철저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런 하나의 상호 문제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좀 강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거금도 연도교 관련해서 이것이 다단계 하도급을 줄 때……

익산청인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거기의 관련 원청사만 신경 쓰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하도급 관계 할 때도 그것

을 체크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팔문**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을 할 때에는 재도급을 할 때, 재도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내용을 했다 는 것이 여기 지적사항입니다.

재도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지된 내용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징계를, 지금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건으로 해서 이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차관,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정희수 위원** 이것은 병산의 일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각 지방청에서 발주 나간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의향 없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제가 거금도 연도교통사고가 난 후에 전국 도로건설사업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정희수 위원** 했는데 방금 이렇게……

여기 삼원렌탈 같은 것은 무등록 건설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쪽에 또 나가는 것이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제점검을 했는데 이래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일제점검을 해서……

○**정희수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현장별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했고요. 지금 이런 사고가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교부에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현행 법령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차제에 이러한 오명이 좀 씻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건설회사들이 해외에 나가면 큰 탈 없이 잘 하는데 항상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감리업체들도 사고 내고 나면 돈 얼마 이렇게 주고 끝내 버리고 말이지,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요? 좀 강하게 법을 개정한다든가 아예 예방적 차원에서 두 번 다시, 영업정지가 아니라 아예 영업을 못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누적으로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그런 제도 개정을 할 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지금 영업정지 기준을 과거에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중대사고 발생 시 업무정지 기준이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12월 이내로 좀 강화를 하고요, 또 감리사 등록 취소에 관해서도 지금 3년에 5회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에 3회만 되어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윤두환 위원님!

○**윤두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사 단장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턴키방식 설계 입찰 시에 이런 동바리 설계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확인한다는 게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한 이 동바리 설계를 하청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면 또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다른 도로 공사에 있는 그런 동바리 설계를 그대로 베껴 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현장 적응이, 전혀 안 맞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또 동바리 설계를 보고 직접 시공하는 이런 인부들이 완전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더라.

그냥 대충대충, 확실히 조여 줄 데는 확실히 조여 주고 힘 받을 부분은 어떻게 각을 세워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나중에 분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전부 다 눈가림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조사단장님으로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김석준 위원님 하시고 나서……

○김석준 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그러실래요?

예,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정희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좀더 추가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사고가 난 이곳은 정말 그야말로 병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법 사례들, 규정과 원리·원칙에 의해서 행해지지 못하는 그런 불법 사례들이 많다는 것 지난 국감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저도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불법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관리·감독해야 될 이 부처만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도로 부분만 전적인 조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공공공사 전반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조치사항도 밝혀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급한 게, 지금 윤두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계가 소홀히 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우선 있어서 지난번 거금도 연도교 사고 이후에 우선 가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특히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는 특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설계 부분의 그런 불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 불법도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러난 게 설계단계의 문제인데 공사단계에서의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있으니까 전반적인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공공사 부분에 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도로 공사 조사하신 것이 있다면 그 조사결과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간의 점검결과는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김재경 위원님!

○김재경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많아 가지고……

아까 보고서 24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행정처분 요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미로-삼척 공사의 경우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제가 법조관이 익숙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는 업무정지 3일을 요구했는데 처분청인 서울시에서는 105일을 했던 말이에요. 더 많다는 것이지.

법조에서는 검찰구형이 법원 판사 형량보다는 항상 높은 게 관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하는 사람보다는 요구하는 사람이 좀더 엄격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그런 게 한 2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관례상 이런 것인지, 어떻습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위법조항 중에 큰 것으로, 중대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행위를 한 조항을 해 가지고 3개월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30일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이 되는데 처분청인 서울시장이 할 때는 90일에다가 가중처벌한 30일의 절반 15일을 합쳐서 105일로 처분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하고

이게 맥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요구가 적정했느냐 하는 의문이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또 하나 2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6월' 요구했는데 장관은 이게 처분이 안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감리사 입찰 참가제한은 처분조항이 없다' 이렇게 부가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예, 저희들은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본부에서 근거조항을 좀더 세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어느 법조문…… 27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난 것이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권오열 저희들이 아마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니, 원주청에서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건교부의 판단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장 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는 부정한 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만 벌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게 몇 조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27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7조를 한번 보세요, 나도 찾아봤는데.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장 박상규 부정한 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재경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그 법 조항을 한번 읽어보고 답변하세요. 아마 3조 단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공사 제조사가 극히 몇 개 없어 가지고 이것까지 제한해 버리면 울스톱되 버릴 그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것이지 이게 어디 시공사는 제조사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닌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장 박상규 위원님, 국가계약법의 정확한 조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김재경 위원 하여튼 27조하고 이것하고는 상

관이 없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오늘 건교위에서 미로-삼척 사건이라든지 거금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마는, 건교부 책임자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지상을 메우고 있는 신정아 사건과 변양호 사건,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주공의 박세흠 사장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미로-삼척이든 거금도든 이것이 대체로 인재라는 것, 제도적인 것보다도 인재라는 것, 주의·관리 잘못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전체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 또 건교부 내의 여러 직원들의 기강해이 이것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주공의 박세흠 사장, 이 사람은 대우건설에 있을 때 대우건설이 당시에 이미 부도에 직결하고 거의 부실 경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미 여러 차례 비자금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언론에도 보고되었었고 당시 국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이 3년간 2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어느 기업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기부금을 신정아가 기획하고 있는 기획전시에 후원을 한 그런 의혹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공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대통령 최측근 한행수 사장입니다. 이 사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제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이 들어온 데는 이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또 2억 9000이나 되는 부실회사가 불필요한 그러한 비용을 기부금으로 주는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그런 사람들이 건교부의 추천으로 현재 건교부 산하 주택공사 사장에 임용하는 이런 근본적인 기강해이가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게 미

로-삼척이나 이런 사건들이고 현재 아마 전국적으로 본다면, 면밀하게 감사하면 미로-삼척이나 거금도 이런 사건과 유사한 것들이 아마 소소하게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이나 사장이 다 없지만 만일 차관이 장관이라면, 당시에 박세흠 씨의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주공 사장으로 이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저는 오늘 김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김석준 위원** 언론에 다 난 내용인데 못 보셨어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김석준 위원** 글썄, 방금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일단 언론 보도 나왔으니까…… 만일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을 주택공사 사장으로, 후보로 추천하겠어요? 하지 않아야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김석준 위원** 방금 얘기했잖아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아니, 그 경위라든지 사안의 법적 타당성이나 당부당 여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고서 관련해서……

○**김석준 위원** 보고서가, 결국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 자체가 건교부가 인사에 여러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서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17일 전체회의 할 때까지 건교부에서, 우리가 지금 대우건설에는 이 자료 요청을 못 합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당시 관련되는 박세흠 사장이 당시에 어떤 경위로 2억 9000만 원을 이렇게 특정 전시 기획에 다른 회사는 하지 않는데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당사자 박세흠 사장은 물론이고 또한 이러한 사람을 추천하게 된 장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다음 17일 보고에 반드시 해 주도록, 그 이전에는 자료라도 제출해 주

고 17일 꼭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사건이, 위원님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후진적이고 원시적 사고라는 데는 아마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산법이나 건기법을 당초에 원래 굉장히 강화해서 냈습니다만 나중에 완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산법과 건기법의 문제점 그리고 보완대책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장관께서는 나중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오시면 종합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바로 법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고조흥·남경필·안택수·유정복·이규택·임태희·한선교·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2.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부겸·김선미·김영선·김진표·김태년·문학진·박기춘·백원우·심재덕·안병엽·안상수·우제창·윤호중·이원영·이종걸·장경수·정병국·정성호·조정식·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4.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정병국·고경화·김애실·김영숙·김우남·이경재·이계경·고조흥·전여옥·신상진·이규택·남경필·김영선·고홍길·임태희·차명진 의원 발의)(계속)
5. **首都圈整備計画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신학용·안상수·김동철·정성호·심재덕·장복

심·박상돈·문학진·엄호성·안병엽·신국환·이해봉·전병헌 의원 발의)(계속)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안명옥·이진구·유기준·엄호성·정문헌·고경화·김형오·박승환·이경재·이해봉·남경필 의원 발의)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장복심·신학용·한광원·원혜영·김정권·김교홍·정장선·박상돈·강길부·변재일·신국환·문석호·주승용·양형일 의원 발의)(계속)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구논회·이영호·정성호·황우여·노현송·김태년·엄호성·이계안·민병두·강혜숙·우제창·정두연·정동채·박상돈·홍미영·윤원호·김재홍·이광철·이경숙·박명광·우상호·김재윤·우윤근·장향숙·문석호·김영주·양형일·신기남·최재성·안영근·유승희·오제세·김형주·강성중·이원영·심재덕·정의용·배기선·유재건·김희선·김종률·김현미·최병국·박기춘·신학용·강기정·송영길·이근식·장경수·정장선·이강래·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고조홍·김송자·김효석·박재완·서재관·신중식·이상열·이인기·이인영·전병헌·정성호·정진석·채일병·최인기 의원 발의)(계속)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최인기·엄호성·신상진·최성·이해봉·김태년·노현송·이영호·고조홍·유재건·안상수·심재덕·이석현·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길부·우제창·변재일·양승조·신학용·이종걸·최규식·김태년·서재관·장복심·주승용·염동연 의원 발의)(계속)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구논회·김동철·김종률·심재덕·양승조·오제세·이시중·이해봉·정문헌·정성호·정장선·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박세환·이인기·이성권·김명주·박형준·서상기·김학송·김영선·박재완·김태환·이명규·이계경·김정훈·김양수·심재엽·박승환·안홍준·이해봉 의원 발의)(계속)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고조홍·김정권·김재원·김재윤·박상돈·신국환·신상진·안경률·안상수·안택수·이계경·이성권·이인기·정갑윤·정문헌·정성호·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정갑윤·이계경·정화원·신상진·최구식·안홍준·유기준·김기현·김명주 의원 발의)(계속)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양형일·우제창·변재일·이종걸·이근식·장복심·조일현·박상돈·노현송·이영순·유선호·최규식·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2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인기·이해봉·정화원·이강두·신상진·강기갑·김명주·안영근·엄호성·김영덕·정문헌·안병엽·유승민·이방호·김우남·김광원·조일현·김낙성·김태년·신중식·이상배 의원 발의)(계속)

2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주승용·노영민·우원식·김낙순·선병렬·우

제항·조일현·장향숙·신중식·유선호·한광원·한화갑 의원 발의)(계속)

2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강길부·배일도·이인기·김석준·박재완·이한구·김태환·김성조·정갑윤·임태희·유승민·고조홍·김애실 의원 발의)(계속)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강기정·윤호중·김선미·송영길·유승희·김태홍·양승조·안명옥·이원영·김영주·신중식·구논회·이광철 의원 발의)(계속)
2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권선택·유재건·장복심·장영달·구논회·정성호·서갑원·우제창·우윤근·이영호·양승조·송영길·이은영 의원 발의)(계속)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김동철·김재홍·김태년·김형주·노현송·배기선·배일도·백원우·서병수·서재관·유재건·이해봉·장향숙·정성호·정장선 의원 발의)(계속)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우원식·노영민·김형주·장향숙·홍미영·박상돈·서갑원·노현송·김태년·정성호·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천정배·양승조·김재윤·김교홍·정봉주·강기정·윤호중·이미경·이상경·서혜석 의원 발의)(계속)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무성·김정권·이성구·엄호성·신상진·박종근·이계경·임해규·박형준 의원 발의)(계속)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교홍·문학진·박상돈·서재관·유필우·정성호·주승용·한병도·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종률·김무성·이해봉·박상돈·신상진·이인기·황우여·김정훈·이성권·안경률·고조홍·서병수·엄호성·정형근·안상수·김희정·박재완 의원 발의)(계속)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김정권·문학진·최규성·유승민·최병국·김재윤·채일병·정의화·이낙연·주성영·김종률·김효석·이계경·박상돈·오제세·유선호·고조홍·손봉숙·채수찬·임인배·김형오 의원 발의)(계속)
37.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이진구·허천·고홍길·김영덕·차명진·조일현·김태환·정희수·진영·고희선·김석준·김재경·유정복·최구식·박승환·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39.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주성영·이해봉·엄호성·김태환·곽성문·유승희·이인기·안병엽·김성조·공성진·이계경·김광원·이상배 의원 발의)(계속)
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고조홍·김광원·김명주·김용갑·김우남·김재경·김충환·신상진·안상수·안영근·엄호성·윤두환·이상배·이인기·이주영·이진구·임인배·정의화·정희수·차명진·황진하·허천·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11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이신 김재경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재경 법안심사 소위원회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7건의 법률안과 소위원회에 계속 심사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등 15개의 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윤두환 소위원장·박승환 위원·이시종 위원·이영순 위원·이재창 위원·정장선 위원·주승용 위원·한병도 위원 등 9인으로 구성된 우리 소위원회는 2007년 6월 22일 및 26일 양일간 건설교통부차관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관과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률안들에 대하여 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기하였던 문제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및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대하여 구역지정 당시 건축 연면적이 330㎡ 미만인 사찰에 대해서는 66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증축기준은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감면 대상 포함 여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창 의원·정장선 의원·정진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노후 공업지역, 낙후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공업지역과 이를 대체하는 공업지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오제세 의원·신상진 의원·박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제세 의원안·신상진 의원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도시의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최소면적기준을 3분의 1까지 완화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승환 의원안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요건,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외조항 신설 등의 내용인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엄호성 의원·유필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엄호성 의원안과 정부제출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유필우 의원안은 2007년 4월 하천법 개정에 따른 댐의 용도를 보완하자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기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국가기본계획 등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인 건축문화진흥법안이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건축기본법안과의 관계에서 건설교통부가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내지 국무조정실을 통한 조정 등을 통해서 각각의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내지 업무영역 분장 등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노영민 의원·이미경 의원·권오을 의원·심재철 의원·이낙연 의원·한선교 의원·주승용 의원·이종걸 의원·안명옥 의원·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영민 의원안·권오을 의원안·심재철 의원안·한선교 의원안·주

승용 의원안·안명옥 의원안 등 6건의 법률안은 건축행위의 규제를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이미경 의원안·이낙연 의원안·이종걸 의원안·박상돈 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돌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온돌시공의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통한 도심 미관의 창출 등을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동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및 건축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며 특별건축구역 내의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상돈 의원·허태열 의원·이재창 의원 및 김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도 개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공장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인근지역에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할 알선하는 등 공장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계안 의원·서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계안 의원안은 국민임대주택사업자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현행법 체계와의 부합 여부 및 관련 법안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서재관 의원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제한

시점을 공람공고일로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의 장기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문표 의원, 우윤근 의원, 김애실 의원, 심재철 의원(2건), 정희수 의원, 김춘진 의원, 최재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애실 의원 안, 심재철 의원 안, 최재성 의원 안 등 4건의 법률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고 홍문표 의원 안, 우윤근 의원 안, 정희수 의원 안, 김춘진 의원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방식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김춘진 의원 안 중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환급 방법 외의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별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선병렬 의원, 문학진 의원, 한병도 의원, 안민석 의원, 허태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인원을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을 현행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하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5세대 이하의 동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비사업 관련자료의 공개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장선 의원, 허태열 의원, 황우여 의원, 최재성 의원, 이경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우여 의원안, 최재성 의원안, 이경재 의원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정장선 의원안과 허태열 의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채납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기존에 강도 높은 규제에 인하여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원 시 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의 소유자에게 제한 없이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토지가격 상승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알박기가 아닌 선의로 주택 등을 소유한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인기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따른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각 혁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대책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주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여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공익사업에 일반화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윤두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행하는 허가취소·공사중지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여부 결정 시 실시계획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창일 의원안은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률이 일정 규모 이상인 지역의 국내 항공노선에 대하여 요금인가제를 도입하고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인가제 및 사업개선명령제의 도입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정부안에 대해서도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범위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고속철도역세권개발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것으로써 역세권 개발 후 운영되는 것이 상업시설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요건 중 면허취득 후 최소기간 요건과 양수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개인택시 영업질서 등 관련사항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음 목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및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이계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조치법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김재경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장시간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승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아까 양당 간사 간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양당에서 찬반토론 한 분씩만 하고 표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부터 먼저 한 분씩 들고 나중에 또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수도권은 국토면적에서는 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전국 대비해서 국토는 11%인데 인구는 48%, 제조업체는 58% 그리고 총사업체로 따져보면 역시 50%, 중앙행정기관은 약 80%, 공공기관은 85%, 100대 기업 본사는 91%, 500대 기업 본사는 87%, 30대 명문대학은 61%가 수도권에 집중해서 과밀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연보전권역 지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해서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수도권 전체 면적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신·증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은 물론 주택, 관광지, 학교, 공공청사, 사무실 등 인구집중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장의 신·증설 허용시에는 개발 남용으로 인해서 통제가 사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수도권규제시책의 마지막 보루인 자연보전권역 해소는—참여정부의 정책기조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의 옳고 그름을 변론하겠습니다—국토의 균형발전 전략 및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게 되고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을 유발해서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소지가 있다, 현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및 자본 유출 등 희생의 결과임을 감안해 볼 때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의 희생을 앞으로 계속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

세 번째 비수도권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해제 시에 정부의 기존 수도권규제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현상을 초래해서 지방산업단지가 공동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만 첨단 우량기업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에는 비첨단 부실기업만 남아서 지방 산업구조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자생적 성장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간 위화감 조성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소득격차에서 오는 양극화 현상 및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참여정부의 기초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정부가 노력해 왔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매우 큼니다.

문제는 다양한 법률체계 속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개발과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 수도권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상생과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오히려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수도권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도시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대외기업과 국제기구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CEO들을 얼마나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이들이 입주하고 싶은 국가, 거주하고 싶은 도시는 풍부한 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쉽게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머서사가 발표한 삶의 질 순위를 볼 때 서울시는 8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경쟁력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제고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이 과밀과 혼잡, 높은 거주비용 등을 유발하여 도시의 쾌적성과 메리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수도권의 유치능력과 혁신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13개의 시·도에서 이미 대대적인 수도권 집중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이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경북, 강원도 곳곳 마을마다 가면 수도권 집중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플래카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부적합하다, 논의는 당장 중단하고 좀더 의견을 모으는 게 맞고, 지금 국민들이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서 벌이고 있는데, 서명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중단되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재형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창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창 위원** 이쪽만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먼저 하십시오. 유필우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유필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유필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하십시오.

○**유필우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 또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난 십수년간 누적된 현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을 너무 획일적으로 또는 매크로하게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 부작용,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쟁력의 저하, 삶의 질의 저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좀더 세심하게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봐야 되는데, 첫째 수도권 지역에는 지방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낙후된 수도권 지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 부근이라든지 경기북부 지역이라든지 또 특정 지역 여러 곳은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낙후되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법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의 변화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너무나 획일적으로 규제가 되고 또 적용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비교우위의 상실, 경쟁력의 상실 문제를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법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 존재하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현대화되고 경쟁력 있도록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지를 옮긴다든지 변화를 가져올 때, 예를

들어서 이 법안에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할 경우에 3년 동안 그것이 총량규제 대상에서 중복되는 것은 허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존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또 우리가 공업지역을 하나 옮길 때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타당한, 현실의 왜곡 현상을 시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수도권 지역을 이런 식으로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수도권 지역의 특정 목적을 위한 지역을 제한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국한해서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에 의한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역을 정하고 또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지역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인 경우에 수도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국가 간 또는 다른 국가의 시·도 간의 경쟁력을 위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경제자유구역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그중에서도 인천 공항 같은 지역은 동북아에 있어서 허브 지역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추진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요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발전지구도 기왕에 미군부대라든지 특정 휴전선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규제 여건으로 인해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던 지역을, 이러한 이전된 지역에 국한해서 그것도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가 정하는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 지역의 잘못된, 왜곡된 것을 시정해 주고 오히려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하나의 규제완화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의 시정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확실히적으로, 포괄적으로 당위적으로 적용되므로 생기는 이 지역의 주름살을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 줘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듯이 수도권정비계획을 일괄적

으로 풀어서 그 지역에 난개발을 초래한다든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지적이다. 지금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는 아파트만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먹거리를 창출하고 무엇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부가가치를 이루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이 간과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늘고 주민만 늘어서…… 인구집중이 되는 것을 막고 수도권 지역이 여러 가지 병행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수도권이 돼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도권 지역의 일반적인 규제완화라고 보지 말고 십수년 동안 이루어 온 수도권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한적으로 또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절차를 거쳐서 풀어 주고 주름살을 살리게 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 찬성……

죄송합니다. 반대토론 먼저 하고요. 죄송합니다. 사회가 서둘러서……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 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선배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아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수도권계획법이 바뀌어서 정비발전지구가 도입이 되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의 증가가, 집중화가 더 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나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해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본연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다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쏠리도록 하는 관문을 열어 주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을 가

속화시키고 비수도권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반대토론해 주셨는데 몇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수도권정비법을 풀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첫째는 수도권도 낙후되어 있다, 수도권 오지는 다시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재정 낙후도를 보면 234개 지자체 중에서 낙후된 데가 78위까지인데 경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중위권 10곳, 상위권 21곳, 하위권인 연천군도 낙후도 종합순위가 85위로 중위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지금 과장되게 말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도권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국가경쟁력은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꼭 수도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인구나 산업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 경우에 1인당 인구가 한 명 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비용—교육·환경·교통 이런 비용—은 지방에서 한 명 늘어나는 것보다도 한 10여 배 이상의 재정수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했을 경우에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면에서나 수도권이 낙후되었다는 그런 면에서도 논리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내기 전에 13개 시·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할 텐데 수렴을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입법 과정에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물론 지방 13개 시·도에서는……

○**홍재형 위원** 됐어요.

지금 13개 시·도 단체장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또 혁신도시 이런 것을 빨리 완결시킨 다음에 이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내야지, 지금 세종시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법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첫걸음도 못 디디고 세종시 끝내려면 아직 멀었는데, 혁신도시 오늘 제주도에서 착공식한다고 야단이지만 다른 데는 하나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놓고 나서

이런 정비법을 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것 먼저 하면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또 하나 이인기 위원님하고 모든 것은 동감입니다. 아마 이것을 유보할는지 아니면 표결을 해야 할지 하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까지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그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이 주입이다라는 그러나 사실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유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흔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의 인구과밀 또 여러 가지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은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결론론적으로 83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수도권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나,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인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아까 이인기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48%가 몰렸다는 그 사실은 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집중방지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결론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표방한 소위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처음부터 정말 많은 정책을 내놨고 또 거기에 따른 입법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수도권 집중방지가 되었느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오히려 더 집중화되었다는 그 사실은…… 엄연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지금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 혁신도시, 기업도

시 또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혁신도시 기공식을 해도 과연 이것이 꼭 될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수도권 현실—국가적인 상황에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기능과 역할과 또 필연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대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위에서 수도권관리법을 차라리 만들어서 수도권에도 경쟁력을 키울 것은 키우고 또 지방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이런 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규제를 풀자 흔히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께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도 하고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오도되었어요.

제가 오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바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소위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떠난 자리를 적절하게 활용시키도록 해야만 재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히려 뒷받침하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서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에……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아직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이전적지에 대한 그 문제와 공장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불가피한 하나의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겹쳐서 의원입법으로 나온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 중에도 정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그야말로 군사시설보호지역, 접경지역 내지는 여러 가지 규제 거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그린벨트 등 그야말로

로 규제 속에서 발전 못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리고 이 정부가 바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시키겠다고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에다가 낙후지역을 열거해서 이 지역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규정된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번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 전반적인 규제 완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야말로 불가피한 지역에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아까 지적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규제완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공장 이전적지, 낙후 공업지역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낙후지역—소위 도서, 오지, 개발촉진지역, 접경지역 이런 지역—과 지금 정부에서 매년 2000억씩 지원해서 개발사업하고 있는 이런 지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군반환공여지이고. 그것도 정부에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정말 낙후지역이라고 인정할 지역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기 위원께서는 자연보전권역도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는 전제하에서 그 반대논리를 죽 꺾었어요. 이것은 그 법안의 내용을 잘못 아시고 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반대토론의 기초가 적절치 않다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저해를 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리고 국가균형정책의 차질을 가져온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국가균형발전이 뭐니까? 수도권을 못살게 만들고 낙후시키면 지역발전된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수도권이든 지역이든 상생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데 마치 수도권이 발전되면 지방은 당연히 낙후된다, 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수도권론, 경기지사가 주장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반론을 제기하셨지만 이것은 하나의 수도권 행정 협의, 협조 이런 차원이 지 무슨 대도시권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도시행정 협조의 관계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이 89위……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려면 수도권 인구를 많이 줄이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질의 향상 그 이전에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을 때 국가의 발전도 기하고 또 크게 보면 국력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국토가 그야말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인기 위원께서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자연보전권역까지 규제를 완화하면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수도권 공동화, 균형발전의 저해, 수도권의 비대화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등은 그 기초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낙후된—아까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법 2조에서 정한 낙후지역, 그리고 특별법으로 지정한 미군 반환공역지에 이어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이유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께서 반대논리를 펴신 중에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한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정부가 바로 혁신도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것일 뿐이지 이것이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이유로 제기하신 사항 중에 수도권 정비법에 낙후지역이라고 하지만 낙후지역으로 볼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대부분 판 데보다 발전이 되었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실제로 가보십시오. 지금 수도권 지역의 접경지역이라든지 인천의 옹진이나 강화 이쪽 가서서 과연 지금 충청도·경상도 지역 중에 여기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있나……

단지 말하자면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낙후지역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통계…… 낙후, 행정자치부가 정한 낙후도에 있어서 지금

수정안에 제시되고 있는 이 지역을 넣는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낙후도를 봤을 때 이렇게 확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가경쟁력 향상에 지장을 가져온다’,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면 그렇다’, 이것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동경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오히려 과거에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의도했던 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소위 잠재경쟁력만 떨어진 다, 그래서 그 제도를 지금 폐지하고 수도권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고 경쟁력 측면으로 확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의견 수렴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정부에서 답변을 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흔히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주축이 되어서 반대운동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노영민 위원님하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이런 명의로 해서 돌렸는데 이 내용에도…… 지금 우리 법안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이것을 돌렸어요.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그런데 마치 자연보전권역이 여기 규제가 완화되는 것만양 해 가지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검토도 없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수도권의 정말 애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을 자극해 가지고 이런 법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우리 현명하신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전체위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아니, 잠깐만!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주승용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아니, 잠깐만요.

○**주승용 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우리 이재창 위원님께서 두 분이 발언할 시간을 다 했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창 위원님께서 결론을 내셨는데 이 결론 내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이 돼야지요. 아무 이야기를 얹고 그대로 넘어가면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주승용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는 어차피 오늘은 우리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찬성토론 또 해야 되고……

○**주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표결할 인원도 안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그래서 정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찬성토론 해야 되고 이렇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항을 오늘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양해를 하시고 제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승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아니, 자꾸 끝이 없기 때문에…… 원래 간사 간에 합의를 그렇게 했으니까는……

○**주승용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재창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발언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반대토론에 들어가야지요.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의사일정도 정하고 방식도 정했으면 그것 수정을 하려면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하세요. 정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이영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잠깐만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어차피 이게 오늘 통과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 다 알고서 아까 그런 것을 서로 양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킬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서로 얘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승용 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주승용 위원님, 잠깐만요. 간사까지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승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예, 말씀하십시오.

○**주승용 위원** 예, 간사 간에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저는 이 문제가 오늘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종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낙에 중요한 법이고 물론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한 명, 한 명씩 했으면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재창 위원님께서 충분히 다 이렇게, 두 명 이상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까지 쓰며 가면서 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줘야 될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이게 다 인정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아까 조금씩 다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승용 위원** 저도 이재창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20분이고 10분이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그렇게 되면 이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주승용 위원** 그러면 5분이면 5분 시간을 지켜 주셔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결정족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난 것을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양해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찬성토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승용 위원** 방금 이재창 위원님께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규제완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줘야지요.

○**이영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지금 법에…… 우리 이인기 위원

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제완화는 전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규제완화를 위한 법이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는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보완법이지……

지금 이런 몇 가지 우리 이재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 간에 발언한 것을 일일이 반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이 다 듣고, 보고 있어요. 또 위원님들 다 찬성하는 의견 들었고 반대하는 의견 다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할 일이지 여기서 무슨, 토론회가 아닌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 위원**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발언은 저한테 허가를 받고 하십시오.

○**이인기 위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포퓰리즘이라든지 대중인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승용 위원**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당의 찬반 입장을 두 분, 두 분씩 했습니다.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기로 했지요. 그 양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도 입장을, 일단 발언을 지금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양당 간에 합의한 것은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두 분, 두 분씩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발언 중에 ‘내용조차 모르고 발언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장과는 좀 다른 해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법안도 검토하지 않은 채 발언을 했는지 어쩐지 이런 것은 분명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어차피 지금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간사 간에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이 여부부터 시작해서 다시 논의한 뒤에 오늘 2시에 속개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식사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고 지금 의결을 못 합니다. 의결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는……

○**이영순 위원** 마무리 지어야 정회가 될 텐데……

○**이재창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승용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 한 분만 듣고 그리고 이 법안은 우리 간사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소위원회로 넘겨서 재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승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위원들이 수도권 낙후지역의 발전을 마치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필요성을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정비발전지구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는데 정비발전지구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법이 바로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모든 혁신도로나 기업도로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 단계 내지는 착공 단계에 있는 아직 실질적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에 있는 많은 비수도권은 ‘이게 제대로 정말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겠냐?’ 하는 그런 우려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수도권 불균형 해소에는 크게 일조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칫 국토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발전지구라는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의 각종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부담금 징수,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총량 규제, 각종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지역 좋습니다. 또 공업지역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거기에다가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5호에 따른 낙후지역 이렇게까지 지금 해 놓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될 우려가 있다, 낙후지역으로 들어가는 접경지역만 해도 9개 시·군에 2910km², 지금 평수를 쓰진 않습니다만 알기 쉽게 8억 8000만 평이 접경지역에 해당이 되고 주한미군 공여지만 한 개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한다면 15개 시·군·구에다가 3448km², 약 10억 4000만 평이 지금 대상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여기에는 모든 것이 또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과 증설이 모두 억제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설만 억제되고 거기에 기존 있는 시설의 증설에는 규제를 다 풀어주게끔, 그래서 자연보전권역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은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좀더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다가 세제 지원도 해 주고 심지어는 도시개발권까지도 부여해 주고, 해도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제2차 균형발전정책 또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든 인센티브를 줘도 안 내려가는데, 그래서 지금 제2차 균형발전정책을 또 쓰고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너무 특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도 해제해 주고 수자원보호구역도 해제해 주고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해 주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어도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북구지역을 조금이라도 규제 완화를 해 주었을 경우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도권만,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로서 반대하고,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지방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아무리 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결국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법안소위에서나 우리 건교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한 뒤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이낙연 위원님 또 노영민 위원님, 일부 위원님들과 또 시민단체에서 탄원서를, 그 내용 중에는 물론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것이 또 자료의 어떤 미비로 인해서 오해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과장은 좀 됐을는지 몰라도 많은 부분이 또, 거의 대부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포퓰리즘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좀 정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포괄적으로, 오늘 제기된 반대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해서 소위에서 재심의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장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 사안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법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통해서 질의만 해 나가고, 그 질의를 하나하나씩 종결짓고 나중에 성원이 되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상 5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영순 위원 법안 심의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21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시행일에 관

련된 부칙인데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토지보상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취업알선에 관련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지금 이 부칙에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에 제78조제4항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장선 위원장직무대리, 윤두환 위원과 사회교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개발로 인해서 이주된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 주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주 정착지에 생활 기본시설을 마련하는 것, 이것도 또 시급한 사안이고 이주민에게 당장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 1항에 제78조제4항을 담아 놓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정부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당초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령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부칙에 포함시켜지지 않았습시다라는 일단 시행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항은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지금 공공 보상법이지요?

○위원장대리 윤두환 지금 의사일정 제21항인데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 항은 아니지요.

○이재창 위원 지금 이영순 위원이 의견 내신 것은……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재창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수정안으로 채택을 해야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정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표결을 못 하잖아요.

○**이재창 위원** 그러면 이 안건은 못 다루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영순 위원이 수정안으로 부칙의 시행일에 제78조제4항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안을 냈는데 정부에서 좋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대리 윤두환** 예, 정부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때듭을 짓고……

○**위원장대리 윤두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됩니까?

○**이재창 위원** 그럼요.

○**위원장대리 윤두환** 의결할 때 하면 된다는데요.

○**이재창 위원** 의결할 때요?

○**위원장대리 윤두환** 예, 지금 아직 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의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오는 대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3항, 제34항, 제3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지난번 소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아까 전문위원, 심사위원장의 보고 때

도 이 부분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형평에 좀 어긋납니다. 혁신도시라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다른 공공사업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불평등한 그런 입법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라고 하는 국책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런 지원을 해서 원활히 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나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창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모든 공공사업에 확대하기보다는 우선 초기 단계에서 혁신도시에 먼저 적용을 해 보고 그 효과 등을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공공사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혁신도시에 우선 먼저 적용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정부에서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이재창 위원님, 다시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지요.

○**이재창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원이 여러 부분에 있는데 혁신도시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일반 공공사업과 달리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일부만 하고 지금 차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른 공공사업에도 점차 확대한다고 하는, 그 성과가 있으면 한다고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같이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최소한도, 적어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만이 아니고 일반 공공사업, 특히 대규모라든지 국가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 예를 들면 국방상의 이유로 해서 광활한 지역에 사격장 같

은, 사격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전하고 주민을 이전하고 이러는 것은 혁신도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분류해 가지고 그 분류의 유형,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도입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한 그 안을 좀, 아까 차관이 답변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제시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제가 돼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법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격장 문제라든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대규모 공공시설을 할 때 다 이런 개별법으로 특별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윤두환**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재창 위원님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지원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다른 위원님들도 이러한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나중에 가부를 결정할 때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정족수가 되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6항부터 하시는데……

○**위원장대리 윤두환** 6항, 7항……

○**이재창 위원** 6항, 7항, 그런데 1항부터 5항에서 대안, 이것에 대한 것을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하는 데 대한 의결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안을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윤두환** 아까 의결 안 했습니까?

○**이재창 위원** 의결 안 했어요, 의결정족수가 안 됐어요.

○**위원장대리 윤두환** 아까 정장선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의결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재창 위원** 아니, 의결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가요……

○**이재창 위원** 그래서 의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6·7항을 하고 바로 1항부터 다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항부터 5항까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은 안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정부 측과 우리 상임위 간에 많은 의견을, 조율을 더 구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리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창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소위에서 심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에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런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은 이 법안이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원 취지는 정부에서 정비발전지구라

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또 특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공공 이전 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그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정비발전지구로 정하는 범위, 또 일부에서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하나의 입법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절실한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표결을 하지 않고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지금, 사실 시간은 9월 20일 까지밖에 없는데 막연히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결말이 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법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내용이 과연 지금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에서부터 또 입법취지 그리고 앞으로 우려하시는, 광범위한 규제완화로 인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저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가 바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정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과다하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유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규정하겠다고 하는 방향만이라도 대체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구심 또 각 지방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또 내용에 대한 검토,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선 미뤄 놓자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표결을 해서라도 결말을 내는 게 낫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시 소위에 회부했으면 좋겠다,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면 본 위원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실 의사

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발전지구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 시·도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내용도 알리고 또 그 의견도 수렴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정부 측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이재창 위원님께서 사석에서나 회의 때마다 계속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의 어려움을.

그래서 다시 이 소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소위원회에서 뭔가 수도권 지역에도 이렇게 소외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이재창 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좀 많은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받

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아까 제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윤두환** 취지에서는 찬성하고……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런데 저희 실무진께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상계획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관한 시행령 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소급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막간을 이용해서 이영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이영순 위원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하고 또 정부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같이 좀 이것을 모아 가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충분히 납득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취지를 우선해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먼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이주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취지는 수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그랬으니까 거기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잘 찾아서 또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위원장대리 윤두환** 이상 5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26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상 5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및 3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3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및 3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39항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3.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조속처리에 관한 청원(이주영 의원의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15시13분)

○위원장대리 윤두환 다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4항까지 이상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심사 소위원이신 이인기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인기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 등 1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유필우 소위원장, 김선미·문학진·이낙연·이진구·허태열 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우리 소위원회는 2007년 6월 25일 건설교통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관과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정병국 의원이 소개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구간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여주-양평 간 제2공구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원웅 의원이 소개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률상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중 대지권원 확보요건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은 이미 법률에 반영되었고,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지난번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청원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영순 의원이 소개한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분양주택의 분양가 내역 공개,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 검증제도화 등을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4월 20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 공시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인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춘 의원 및 김덕규 의원이 각각 소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정부가 청원의 취지와 같이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재건 의원이 소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인감증명서 첨부 간소화 등을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6월 22일 개의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그의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소개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소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서재관의원 대표발의) 조속처리에 관한 청원”은 2006

년 12월 22일 동 법률이 제정되어 이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영순 의원이 소개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의 철회요청에 관한 청원”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은 사업추진 절차 부적정, 경제성 과다추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철회하고, ‘천변저류지 및 제방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이 정부 차원의 재검증을 거쳐 현재 보상 및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선호 의원이 소개한 “경매완료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기존에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장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경매가 완료된 부도임대주택은 이미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세환 의원이 소개한 “오미재터널공사 착공요망에 관한 청원”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소재 31번 국도 개량공사의 일환으로 오미재에 터널을 착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교부가 오미재 구간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그 추진 경과의 확인 등을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낙연 의원이 소개한 “비주거 건물의 위반시설 자진철거 대책마련과 일부 양성화 요구에 관한 청원”은 비주거용 건물의 위반시설을 자진철거 하는 경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 취소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비주거용 건물의 위반시설 양성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자진철거 시 이행강제금 감면이나 분할납부 등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임인배 의원이 소개한 “중앙선·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은 망우역을 통과하는 중앙선 및 경춘선 철도로 인한 소음 저감을 위해 주변에 터널 또는 돔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건교부가 망우역 일대 아파트 단지의 층별·시간대별 소음을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최재천 의원이 소개한 “개인택시 차고지 폐지에 관한 청원”은 개인택시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내용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병헌 의원이 소개한 “신안산선 대립삼거리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은 신안산선 노선 중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의 접경지역인 대립삼거리에 역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촉구하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원 의원이 소개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관련 시행령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건교부에 촉구하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환**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3건의 청원은 그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법안 중 심사보고서와 대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 석 준	김 재 경	박 승 환	유 필 우
윤 두 환	이 낙 연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인 기	이 재 창	정 장 선	정 진 석
정 희 수	주 승 용	최 재 성	한 병 도
허 천	홍 재 형		

○청가 위원(2인)

강 길 부 이 진 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유	병	곤
전 문 위 원	이	을	복
입 법 심 의 관	박	명	수

○정부측 참석자

건설교통부

차	관	이	춘	희
건설선진화본부장		박	상	규
원주지방국토관리		권	오	열
청				
익산지방국토관리		강	팔	문
청				